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74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김민전·박덕흠·정연욱

박정하 • 김기현 • 김태호

김대식 • 박상웅 • 김용태

윤상현 • 나경원 • 조배숙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특히, 지방 의 공교육이 약화되고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며 정주를 유도할 체계 가 부족한 점이 주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공교육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교육발전특구·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올해 교육부는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8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육발전특구 •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과 운영, 특례 등

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 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다.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안 제10조).
- 마. 선도지역을 지정받으려는 수도권의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교육혁신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 조).

- 바.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혁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7조).
- 사. 선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혁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안 제20조).
- 아. 특구와 선도지역의 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규제특례를 규정함(안 제23조 부터 제37조까지).
- 자. 특구와 선도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혹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규제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신청·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운영을 통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정주기반을 강화하며, 지역소 멸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발전특구"란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2.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4장제1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3.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이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해당 규제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협약기관"이란 교육발전특구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이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할 수있도록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6.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지역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 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이하 "특구"라한다)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이하 "선도지역"이라 한다)에 규제특례 및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 및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 제5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 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
 - 2. 수도권을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 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 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특구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 운영기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특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구 내 대학 및 기업 등 현황
 - 3.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특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역협의체(이하 "특구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특구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구 협약안의 작성
- 2. 특구 협약기관 간 연계 · 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 3. 제7조제1항에 따른 특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
- ⑤ 교육부장관은 특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특구지역협의체에 위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절차와 제3항에 따른 특구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절차와 구체적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계획(이하 "특구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특구 계획의 작성 방법 및 규제특례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특구의 변경)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특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 및 특구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구 지정 및 특구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특구의 유효기간 및 지정 해제) ① 특구의 유효기간은 특구의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특구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 ②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3.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교육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해제 신청에 따라 특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이하"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3. 특구 협약 및 특구 계획에 관한 사항
 - 4. 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 5. 특구에서 신청한 규제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 6. 특구의 운영 실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및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담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와 선도지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특구 운영 전담조직)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특구 운영의 성과관리)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시기,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

- 제15조(선도지역의 지정신청) ① 수도권의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구로 이미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선도지역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선도지역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도지역 운영기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선도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선도지역 내 대학 및 기업 등 현황
- 3. 선도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 4. 그 밖에 선도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③ 선도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이하 "선도지역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④ 선도지역 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도지역 협약안의 작성
- 2. 선도지역 협약기관 간 연계 · 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 4. 그 밖에 선도지역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
- ⑤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선도지역 지역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선도지역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선도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교육혁신 위원회의 검토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선도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선도지역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선도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사업운영계획(이하 "선도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계획의 작성 방법 및 규제특례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선도지역의 변경)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나 제17조제1항의 선도지역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선도지역 지정 및 선도지역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9조(선도지역의 유효기간 및 지정 해제) ① 선도지역의 유효기간은 선도지역의 지정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 ②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도지역의 지정해제 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때
 - 2. 대학이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때
 - 3. 대학의 지원을 통해 공교육 혁신 추진이 불가능할 때
 - 4. 그 밖에 선도지역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도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교육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선도지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선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 3. 선도지역 협약 및 선도지역 계획에 관한 사항
 - 4.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 5. 선도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 6. 선도지역의 운영 실적과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선도지역의 지정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및 그 밖에 선도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선도지역 운영 전담조직)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선도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도지역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선도지구 운영의 성과관리) ①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공동으로 선도지역 운영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시기,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제특례

제1절 특구와 선도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 제23조(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선도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설립기준을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 내 협약기관이 「유아교육법」 제8조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유치원·어린이집 비용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도 불구하고 특구 계획에 따라 교육·보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특구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 며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특례)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 터를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26조(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들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이하 "늘봄학교"라 한다)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이하 "거점형 늘봄학교"라 한다)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거점형 늘봄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점형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시설로서학교 밖의 시설(이하 "거점형 늘봄센터"라 한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 ④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의업무와 권한, 책임 중 거점형 늘봄학교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할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직원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
-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에 따른 학교장의 학교 시설·설비 ·교구의 관리·점검·보수·교체 등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시설 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 및 책임
-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교 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에 대한 학교장의 업무 및 책임
- 4.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민원처리 업무 및 책임
- 5.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학교장의 취업자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학교장의 취업자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의 확인 등의 권한과 책임
- ⑤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 등 학교 밖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이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 중에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거점형 늘봄센터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이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직접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설립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도서 및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8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따라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계획을 적

용받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세계화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 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특구 관할 교육감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 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 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0조(지역 교원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의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

-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령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관계없이 특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교원을 양성하며, 자격 검정 및 수여를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자격의 요건,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과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과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 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의 자격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개방형 공모교장 자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만 해당한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장(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 ④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지역교육 혁신과 안정화를 위하여 특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있다.
- 제32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 교사와 협약기관 전

문가의 공동 수업이 필요한 경우「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 29조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기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 제33조(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산학겸임교사의 종류, 자격 기준 및 대체비율을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 중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구 내초·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다.
 - 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겸임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특성화고등학교 교원 파견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이 조에서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의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하여 「초·중등교 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1.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으로부터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 사로서의 자질을 평가받은 자
- 2.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의 교원 제35조(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사증의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특구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 또는 무상 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에게도일반연수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특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유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항목과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6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가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1.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며, 그 필요성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
 - 2. 완화된 교사 면적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체 학습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한 경우
 - ②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 도 불구하고 산학 협력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사시설의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 가능 요건에 관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구 내의 범위에서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

치할 수 있다.

- 제37조(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토지는 특구 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신·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 구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 약을 둘 수 있다.

제2절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제38조(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① 특구나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선도지역의 경우 대학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장제1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교육 분야 규제 적용 제

- 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 1.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 2.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구나 선도지역을 운영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해당 규제의 존재 여부와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제41조에 따른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존재 여부와 규제 적용 제외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교육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허용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 제외 우선 허용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교육부장관과 관계기 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8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 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혁신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⑨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요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8항의 법령 정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규제 제외 우선 허용에 대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제38조에 따라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받아 추진되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0조(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제41조에 따른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받은 경우
 - 2.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제38조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4.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교육부장관은 규제 제외 우선 허용에 따른 제도 및 사업의 추진으로 공교육 발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의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이 취소된 경우,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사업 추진을 중단하 여야 한다.
- 제41조(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이하 "규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의 부 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에 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 ② 규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42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와 선도지역의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구위원회, 혁신위원회 및 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